

의안번호	2203038
의 퇴 인	이재명의원
회 답 일	2024.10.8.
추 계 번호	24D3007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	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감독관(지방근로감독관 추가)은 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(현행법 “그의 관할 구역”)에서 발생하는 「근로기준법」, 「최저임금법」 등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조의2(근로감독관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범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에 두는 근로감독관(이하 “지방근로감독관”)이 추가됨에¹⁾따라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를 “그의 관할 구역”에서 “소속 관서의 관할 구역 내 그의 업무 범위”로 개정(안 제6조의2)
 - 개정안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에 지방근로감독관이 추가되는 경우 사법경찰관 직무교육 실시, 수사·증거수집 활동을 위한

1) 이재명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039호)에서 지방근로감독관 신설

경비 및 특별사법경찰관인 공무원에게 수사활동비가 지급되어 추가재정소
요가 예상됨

- 다만, 지방근로감독관이 되는 공무원 수, 수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지
방근로감독관에게 지급될 수사활동비 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
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활동비를²⁾ 매월 25만원 지급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
단체는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(시·도 5급 이하,
시·군·구 6급 이하)에게 매월 20만원 지급³⁾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

2) 「근로감독관규정」 제6조(활동비 지급) 근로감독관과 근로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
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.

3) 「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